

2018년 이노비즈기업 신규 혜택 안내

주요 내용

- ①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
- ② 이노비즈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(최대 7년)
- ③ 이노비즈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
- ④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

이노비즈협회

(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)

1

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 (2018.01.01. 시행)

◆ 추진배경

- ◇ 협회에서는 그 간 지방세 감면 관련 사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, 이를 토대로 정부에 이노비즈 지방세 혜택 감면 지속 요청
- ◇ 이에, 정부는 '17년 11월 “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” 발표를 통해 이노비즈 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 방안 포함, '18년 1월부터 시행

□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

<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>

내 용	기 존	개 선
•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면제 * 벤처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제외	• 수도권 내 종과 (3배)	• 종과 면제 (일반 과세)

-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이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종과하는 「수도권 취득세 종과 제도」를 운영하였으나,
 - * 수도권 종과 : 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과 공장 취득 시 취득세 3배 종과 (2%→6%)
- 이노비즈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'17년 12월 「이노비즈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」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'18년 1월 1일 시행

<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종과 면제 예시>

- ① (취득시 혜택) 업력 5년 이내의 수도권 소재 이노비즈기업 A사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50억원 사옥 혹은 공장을 취득·증축하는 경우
 - ⇒ (기존) 종과세금 3억(6%) → (변경) 일반과세 1억(2%) 납부, 2억원 세금 감면
 - ② (용도변경시 혜택)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50억원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한 수도권 소재 이노비즈기업 A사가 건물용도를 임대용에서 주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경우
 - ⇒ (기존) 종과세금 3억(6%) → (변경) 일반과세 1억(2%) 납부, 2억원 세금 감면
- ※ 단, 수도권 외 기업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종과 면제 제외

◆ 추진배경

- ◇ 정부는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 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 적극 지원 추진
 - ◇ 이의 일환으로, 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기업 등)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법안이 마련
- ※ 협회에서는 '16년 국세청장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, 일부 내용이 채택된 것임

-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기업이 이노비즈기업 등으로 확대
→ 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(수도권 6년) 간 유예 가능

<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기업 확대>

확대 내용	기존 유예 대상	유예 대상 확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기업 확대 * 정기 세무조사 : 4년 * 유예기간 : 수도권 2년, 지방 3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자리창출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자리창출기업,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

-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4년마다 이루어지나, 우수 기업의 경우 최대 3년(수도권 소재 2년, 지방 소재 기업 3년) 간 유예 가능
- 유예 대상 우수 기업이 기존 일자리창출기업에서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
 - (기존) 일자리창출기업 → (확대)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 추가
 - * 일자리창출기업 :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2% 이상 증가 (최소 1명)
 - 스타트업 기업 : 사업개시일 5년 미만인 벤처기업 지정 중소기업
 - 혁신 중소기업 :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
- 이에 따라, 정기 세무조사가 지방 이노비즈기업 최대 7년(정기 4년 + 유예 3년), 수도권 이노비즈기업 최대 6년(정기 4년 + 유예 2년)까지 유예

◆ 추진배경

◇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등의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, '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

※ 협회에서는 '17년 특허공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이노비즈기업 특허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건의하였으며, 일부 내용이 채택된 것임

□ 중소기업 특허(실용신안, 디자인 포함)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

<특허 수수료 개편 내용>

확대 내용	기 존	기간확대 및 금액감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* 기간확대 및 금액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4~9년차)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4년 ~ 존속기간) 50%

○ 특허 등록 이후 매 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의 감면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특허 유지에 대한 부담 완화

* 연차등록료 :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존속기간(특허 20년, 실용신안 10년, 디자인 20년) 동안 매 년 납부하는 등록료

- (기간확대 및 금액감면) 4년차~9년(30%)→4년차~존속기간(50%) 감면

* 예시 : 특허권 1건 보유, 특허권내 청구항(발명의 보호범위 수) 1개로서 20년간 권리를 유지할 경우 연차등록료 (현행) 4,625,000원 → (개정) 2,402,500원

○ 이 외에도, '특허키움 리워드 제도'를 신설하고 직무발명보상 및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 우대 연장 등의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

- (특허키움 리워드 제도) 특허 창출 따른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의 총 납부금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납부금액의 10~50%를 기업명의로 적립, 이후 타 수수료 납부 시 활용

- (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우대 연장) 연차등록료(4년차~6년) 20%추가 감면이 '22년 2월까지 연장 (기존 '18년 2월 만료)

*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: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

*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: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, 수익창출하는 기업

◆ 추진배경

◇ '14년 12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후, 본회-지회 간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노비즈기업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추진

<'14년 12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(안) 주요내용>

- ① 이노비즈기업(기술혁신형 중소기업) 법적정의 마련
- ② 이노비즈기업 통계·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
-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(KOSBIR) 적용 대상 확대
- ④ 이노비즈기업에게 인수합병(M&A) 관련 특례혜택 부여
-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근거 마련

□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제정

- (주요 내용) 이노비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근거 마련
- (추진 현황) 부산('17년 6월), 대전·경남('17년 12월) 3개 지자체 시·도의회 조례 통과 및 시행
- (향후 계획) 조례 미지정 지역 제정 지원
 - 대구·경북, 강원, 충남, 충북, 광주·전남, 전북 등

<참고 :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법적 근거>

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조 (정부 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